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26-201 호

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자동차관리법」제13조를 위반하여 말소등록신청을 지연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, 수취인미거주, 수취인 부재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1. 건　　명: 「자동차관리법」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

2. 근　　거: 「자동차관리법」제13조 제1항 및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제20조
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
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차량번호	성 명	주 소	위반내용	해태기간	과태료 금액(원)	비 고
40러8320	박**	부산광역시 수영구	말소등록 기간경과	2025.02.01. ~ 2026.09.09.	400,000	사전통지

4. 공고기간: 2026. 11. 02.(월) ~ 2026. 11 .16.(월) 15일간

5. 의견제출 안내
 가. 본 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의견 제출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고지서를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
 나.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과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3급이상),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다. 의견제출 방법
 - 의견제출기한: 2026. 11. 2. ~ 2026. 11. 30.
 - 우편 제출: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61, 2층 말소등록 담당자
 - FAX 제출: 051-888-6923
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(☎051-290-543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11월 2일

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